

[별지 제7호서식]

유공자 포상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부문	* 포상 공고시 포상 분야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만 기재합니다.	[] 구분 [] 개인 [] 법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table border="1"> <tr> <td colspan="2">성명</td> <td colspan="2">(한자)</td> </tr> <tr> <td colspan="2">기관명</td> <td>직위</td> <td></td> </tr> <tr> <td colspan="2">주민번호</td> <td>나이</td> <td>만 세</td> </tr> <tr> <td rowspan="2">신청 유 공 자 기 본 사 항</td> <td rowspan="2">연락처</td> <td>주소 (주택) (직장)</td> <td></td> </tr> <tr> <td>전화 (직장)</td> <td>(휴대전화)</td> </tr> <tr> <td colspan="4">E-Mail</td> </tr> </table>			성명		(한자)		기관명		직위		주민번호		나이	만 세	신청 유 공 자 기 본 사 항	연락처	주소 (주택) (직장)		전화 (직장)	(휴대전화)	E-Mail			
성명		(한자)																						
기관명		직위																						
주민번호		나이	만 세																					
신청 유 공 자 기 본 사 항	연락처	주소 (주택) (직장)																						
		전화 (직장)	(휴대전화)																					
E-Mail																								
《중소기업기술보호 참여실적》 * 최근 순으로 기재																								
사업명		사업내용	참여기간																					
1.			20 . . . ~ 20 . . .																					
2.			20 . . . ~ 20 . . .																					
3.			20 . . . ~ 20 . . .																					
《과거 수상경력》 * 최근 순으로 기재																								
포상기관		포상종류	포상일자																					
1.			년 월 일																					
2.			년 월 일																					
3.			년 월 일																					
《징계형별 경력》 * 최근 순으로 기재																								
징계기관		징계내용	징계일자(기간)																					
1.			년 월 일																					
2.			년 월 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적조서 2. 공적조서를 입증하는 자료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제출서류에 아래와 같이 분류된 개인정보는 오로지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사무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일반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사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 한 대상자 여부 및 사유 확인

2. 일부 개인정보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사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아래 명시된 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받은 기관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제3자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 관 명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중소기업기술 보호 전담기관	일반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사무 담당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노동부(산업안전관리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일반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 추천제한 대상자 포함여부 및 사유 확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는 제출일로부터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사무가 종료되는 날까지 이용됩니다. 다만, 포상수여자는 상훈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해 개인정보가 서훈기록부에 별도로 기록·관리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 1항에서 4항까지의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공적조서

(1) 성명 (한글) (한자)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학력			경력								
(4) 기간	(5) 출신학교	(6) 전공	(7) 기간	(8) 근무회사(기관)	(9) 사업분야	(10) 직위	(11) 담당업무				
~			~		아래분야 참조						
~			~								
~			~								
~			~								
~			~								
※ 사업분야 : 1.전기·전자 2.기계·금속 3.건설·환경 4.정보통신·SW 5.섬유·화학 6.바이오·식품 7.기타											
※ 학력, 경력 위주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수공기간 합계	년 월
(12) 공적 요지(100자 이내로 요약)											
(13) 공적사항(분야별 심사항목을 참고하여 서술식으로 A4 3매 내외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유공자 포상 추천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추천인	상 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주소	담당자/전화번호

신청인 (피추천 자)	성명	직위/직급
	부서명	전화번호

신청인 과의 관계	
-----------------	--

추천사유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기관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추천인 제출서류	1. 공적조서 2. 공적조서를 입증하는 자료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 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추천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저라설자

추천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정	→	통 지
추천인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3. 대표자 : (생년월일:)

4. 소재지 : (전화번호:)

5. 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청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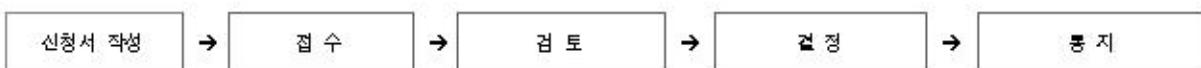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 등 교육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전용 공간과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210mm×297mm(백 상지 80g/m²)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서

1. 기관명 :

2. 대표자 : (생년월일:)

3. 소재지 : (전화번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청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기관	기관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주요업무 분야	
설립근거	
설립목적	
설립 연월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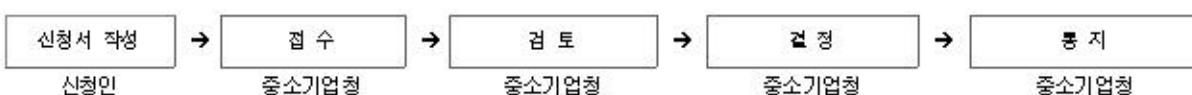
시청이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 × 297mm (백 상지 80g/㎡)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기술침해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신고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본사)	(전화번호:)	
	주소(공장)	(전화번호:)	

침해 기술 유형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기술 [] 대기업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개발한 기술 [] 자체비용으로 개발한 기술 [] 기타의 방법으로 개발한 기술
	침해 내용
조치 요청 사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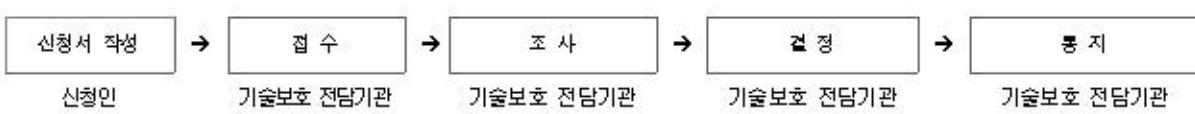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침해내용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포상 수상자가 확정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포상 여부를 추천자(추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포상을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2조(비밀유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법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법 제32조의 내용을 포함하는 비밀유지협약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업무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부분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28일까지로 한다.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 및 신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 보호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공자 포상추천서(중소기업 관련 기관이 추천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공자 포상신청서(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공적 조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심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나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등의 기본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심사(이하 “기본요건 적·부 심사”라 한다)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기본요건 적·부 심사를 실시 후,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 후보자를 2배수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 후보자의 배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포상심사위원회는 공적기간, 업적, 평판,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포상 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서류심사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정성적 평가 위주로 구성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중소기업청장은 공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 후보자의 공적에 대하여 공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 후보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교육실적 및 교육과정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유지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중소기업 청장과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보호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을 관리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간 동안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운영지침 제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보호관제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및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육 및 전담인력, 전용 공간 등
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보호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3개 이상 개설·운영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인력을 3명 이상 확보
할 것
 - 가.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기술보호 관련 교육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다. 기술보호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교육생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2명 이상 상시 고
용하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공간 및 시설을 갖출 것
 - 가.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150m^2$ 면적 이상의 교육장을 2개 이상
보유할 것
 - 나.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 상 적합한 장소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방
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다. 교육전용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를
할 것. 다만, 임차일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되어야 한다.
-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
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사
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
체 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업무 또는 정부 지원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기술 또는 보안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 업무공간을 보유할 것
 - 가. $82m^2$ 면적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 나. $25m^2$ 면적 이상의 상담실과 회의실을 2개 이상 구비할 것
 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할 것
 - 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용 전산장비
 - 나. 방화벽, 백신 등 전산보안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전담기관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 제3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①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5조 제3호에 따라 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임치물에 대한 기술 거래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술 거래 및 평가 기관에 기술가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치물 전용 기술평가시스템 및 기술 평가모형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임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치제도의 활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 신고)**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신고한 후 지체 없이 중소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술침해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진단 및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 제5조(전담기관 지정)**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장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인력의 과반수 이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불 임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정 2014. 11.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기술자료 임치물”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치된 기술자료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4.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둔산동)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팩스 : 042-472-3289
- 문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042-481-445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침해신고서 접수시 신고자와 협의하여 수사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지원
-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 시행령에서 위임된 기술보호 전담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규정
 - 전담기관은 중기청 승인을 받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 마련
-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7조 및 제8조)
 - 시행령에서 위임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규정
 - 기술보호 전담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을 관리하고, 필요시 운영점검 실시
- 업무 위탁기관의 사업운영지침 제정(안 제9조)
 - 기술보호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중소기업청 승인을 받아 사업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보호 포상대상자 추천·신청 및 심사절차(안 제10조 및 제11조)
 - 기술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및 신청 방법 규정
 - 포상 추천을 받은 자 및 포상 신청자에 대한 심사절차 마련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325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14. 11. 29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임차 활용 지원(안 제3조)
 - 공공기관인 기술 거래 및 평가 기관에 기술자료 임차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하고, 임차물 전용 기술평가시스템 및 기술 평가모형 개발을 지원
- 중소기업 기술의 침해 및 유출 신고(안 제4조)
 - 중소기업기술의 침해·유출이 발생시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침해 신고서 제출